

포항해양경찰서 공고 제 2026-4호

「2026년 연안안전지킴이」 참여자 모집 공고

2026년도 해양경찰청 직접일자리사업 「연안안전지킴이」 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운영 개요

- 활동기간 : '26. 5. ~ 10. / 약 6개월 <서류접수 3.26. ~ 4.1. / 7일>
- 활동비 : 월 1,181,412원(※ 주5일, 월80시간 근무 기준, 주휴·연차수당 포함)
- 근무시간 : 월 20일(총 80시간) / 평일 16일·주말 4일 (1일 4시간)
- 모집인원 : 총 10명

구분	포항해양경찰서				
배치장소*	오도자연 발생유원지	용한해안가	임곡북방파제	구룡포7리 갯바위	감포항 소형선부두
인원	2	2	2	2	2
담당업무	연안안전지킴이(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구역 안전순찰 지원 등)				

* 치안수요·지역 특성 반영하여 현장 맞춤형 탄력적인 근무 가능

지원 자격

- 선발대상 : 만 19세 이상 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으로서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연안사고 예방 활동에 경험과 열의가 있는 사람
- 결격대상 : 공공기관 등 일자리사업(전일제, 동일시간) 중복 참여자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모든 지원자 필수 제출

① 지원서 ②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전체 표기) ③ 반명함 사진 1매
④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 또는 일반건강검진결과 통보서 1부 (* 발급방법 안내문 참조)

- 선택서류 : 해당 대상자 만 제출

①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②해양안전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③ 관련 업무경력 증명서
④ 최근 3년 이내 해양경찰관서 감사장 사본 등

선발 방법: 해양경찰서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 체력검사, 면접을 실시하여 심사기준 및 심사평가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문의처: 포항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054)-750-2248



포항해양경찰서장



2026년 「연안안전지킴이」 모집 안내문

모집 요강

- 연안안전지킴이 임무 :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지도 활동 등
- 운영 기간 : 2026. 5. ~ 10. (6개월간)
- 모집 인원 : 전국 연안안전지킴이 194명(포항해양경찰서 10명)

관할	중부청(48명)				서해청(38명)				남해청(48명)				동해청(40명)				제주청(20명)				
	인천	평택	태안	보령	여수	완도	목포	군산	부안	울산	부산	창원	통영	사천	속초	동해	울진	포항	강릉	제주	서귀
인원	14	8	14	12	12	6	10	6	4	10	14	8	12	4	6	10	8	10	6	12	8

- 활동 시간 : 월 20일(총 80시간) / 평일 16일, 주말 4일(1일 4시간 기준)
- 지원 자격 : 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주소지 기준)으로서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연안사고 예방활동에 경험과 열의가 있는 사람
- 결격 사유 : 동일시간대 또는 전일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일자리 사업 중복참여자

지원방법 및 선발

- 서류 접수 기간 : 2026. 3. 26.(목) ~ 4. 1.(수) <7일간>
- 접 수 처 : 관할 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또는 해양경찰 파출소(방문·우편 접수)
- 제출 서류 (필수 5종, 선택)

필수	① 지원서(홈페이지 게시)	② 반명함 사진 1매
	③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홈페이지 게시)	
	④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전체표시 / 신분증 지참)	
	⑤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 or 일반건강검진결과통보서 1부 (발급 방법 하단 참조)	
선택	①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② 해양안전 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③ 관련 업무경력 증명서	
	④ 해양경찰 관서 발급 감사장 사본 (* 최근 3년 이내 발급분)	

(※ 채용건강검진대체 통보서 또는 일반건강 검진 결과 통보서 발급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nhis.or.kr) → 건강모아 → 나의 건강관리 → 국가건강검진정보 →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직장제출용) 또는 건강검진 결과 조회 및 발급(일반, 24.1.1 이후 검진분)

- 선발 방법: 해양경찰서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 체력검사, 면접을 실시하고, 심사기준 및 심사평가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 문의처: 포항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054) 750-2248)

심사 기준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배점	점수
1. 서류 심사		30	
가. 취업취약계층 대상 여부(1개당 5점, 최고 10점까지) - 선택제출 1번		10	
나. 해양안전 관련 분야 자격증 (1개당 5점, 최고 10점까지) - 선택제출 2번		10	
다. 관련 업무 경험(경찰·군인·소방·교정) - 선택제출 3번		5	
라. 해양경찰관서 감사장 (최근 3년내 발급분에 한함) - 선택제출 4번		5	
2. 체력 검사		30	
□ 경찰관서 측정	▶ (종 목) ①악력 측정, ②30초 앉았다 일어나기, ③보행 상태 ▶ (점 수) 3개 종목 최종 합산	30	
3. 면접 평가		40	
가. 연안안전지킴이 활동에 대한 이해도		10	
나. 지킴이 활동 적합성·성실성		10	
다. 연안안전지킴이 활동에 대한 열의		20	
합 계		100	

선택제출 서류 기준

- 제출 원칙: 관련 증빙서류를 지원자가 제출하여 입증, 해양경찰서 업무담당자가 제출 서류 기준충족 여부 및 진위 등을 판단

1. 취업취약계층 대상 기준(①~⑦에 한하여 인정)

대 상		증빙 자료	
①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소득 60% 이하	◦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국민연금소득월액 및 임의가입 여부, 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기타 연금 수급내역 등	
②여성가장	공 통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선 택	부모 부양시 가출·행방불명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실종신고서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또는 형확정판결문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구직등록후 6개월이상 실업인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장의 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		
③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④결혼이민자	◦ 혼인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⑤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⑥장기실직자(6개월 이상)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등) 또는 자치단체장의 확인서		
⑦성매매피해자	◦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 유의사항 :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수급만으로는 '저소득층' 인정이 어려움

①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를 활용한 저소득층 판단 방법

- “가구원수”에 따라, 해당 “가구의 소득합산액”이 기준표의 해당 소득 기준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판단

▲ 예: 2인 가구, 소득 합산액이 2,519,575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단위: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60%)	1,538,543	2,519,575	3,215,422	3,896,843	4,534,031
가구원수	6인	7인	8인	9인	10인
기준 중위소득 (60%)	5,133,571	5,709,090	6,284,609	6,860,128	7,435,646

②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판단 방법

- 공공 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만15세~만34세)의 경우 ①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②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구직등록을 마친 자

*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

③ 여성 가장

- 미혼, 이혼.사별 등 배우자가 없는 여성, 신체·정신장애 등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서 ①18세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 ②60세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③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무관)을 부양하는 경우

④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5조 참조)

2. 인명구조자격증 등 해양안전 관련 분야 자격증 기준

- 국가자격증 및 민간자격증 불문, ‘수상레저’, ‘수중레저’, ‘인명구조’, ‘수상구조’, ‘잠수’, ‘응급처치.구조’ ‘안전관리’ 등 해양안전과 관련성 있는 키워드를 포함, 해양안전(연안안전)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자격증

<해양안전 관련 분야 자격증 예시>

잠수기능사·산업기사·기능장, 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1·2급, 요트조종면허, 해기사면허, 수상구조사, 「의료법」상 의료인, 응급구조사1·의료법2급, 인명구조요원강사, 인명구조요원, 응급처치자격증 등

- (유의사항) ‘업무경험 항목과 중복성 있는 자격증’ 및 ‘취득과정 단순 수수료(증)의 경우 인정 불가, 동일 명칭·주관 자격증은 1건만 인정

3. 관련 업무경험 기준 : ‘경찰·군인·소방·교정직’ 관련 5년 이상 근무경력

체력검사 관련 안내

- 체력검사 평가는 해양경찰서에서 진행되며, 제출하신 건강검진통보서 및 당일 체력평가 사전 문진표에 따라 일부종목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력검사 평가항목 및 기준 >

평가 항목	평가 기준 (PASS제)	점수 부여
가. 절대 악력 측정	남자 31.8kg / 여자 20.4kg	기준 총 족 : 10점
나. 30초 의자 앉았다 일어나기	남자 15회 / 여자 14회	기준 불충족 : 7점
다. 보행 상태 검사	외관상 나타나는 보행상태	미 실시 : 5점

기타 참고사항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이며, 청구 기간이 경과하거나 미 반환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 됩니다.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은 무효가 됩니다.
- 체력 검사 일정은 별도로 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 세부 일정은 전화 또는 문자로 알려드리며,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이므로 지원서에 연락처를 올바르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안안전지킴이 임무수행 및 활동 여건을 감안하여 제출된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의 결과, 이상항목이 3개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체력검사 참여가 불가능한 점 알려드립니다.
 -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의 경우, 검진일로부터 청구완료까지 통상 30일 소요됩니다.
- 연안안전 예방활동에 관심있는 지역 주민분들의 많은 참여와 지원을 바랍니다.

2026. 3. 6.



포항해양경찰서장

직접일자리 사업 반복참여 제한기준

<출처 : 고용노동부, 2026년 직접일자리 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Ⅰ 반복 참여제한 원칙

-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1년간 사업참여 제한하고,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 (참여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

Ⅱ 재참여요건(참여 제한기간 종료 →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 → 사업 재참여 신청)

- 반복참여 제한대상자 중 제한기간 종료 후 사업 참여를 원하는 자는 사업 참여 신청 이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증빙해야만 사업 재참여 가능

Ⅲ 실업급여 신청자(실업급여 수급 뒤 다시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 반복참여 제한 대상자는, 제한기간 종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 → 사업 재참여
- 반복참여 제한 대상자 아닌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사업 재참여 가능
 - ①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참여희망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 필요
 - ②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후 참여희망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 불요

Ⅳ 반복참여 예외적 허용

- 반복참여 허용되는 참여자 : 65세 이상 고령자
 - ① 단, 만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 시, 선발 총점의 5% 이상 감점하여 평가
 - ②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인적 특성 고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직접일자리 사업 재참여 허용
- 참여자 모집을 위한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 반복 참여자라 하더라도 선발 총점의 일정 비율을 감점하여 선발 진행 가능
 - * 재공고 시 반복참여자를 채용할지 여부, 감점비율 등은 사업담당자가 사업특성, 지역 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선발 총점의 최소 20%이상 감점 권고
- 직접일자리 참여이력이 없는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미참여자 중에서 부족 인원만큼 선발 가능